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82
----------	-------

발의연월일 : 2025. 9. 23.

발 의 자 : 한창민 · 백선희 · 용혜인
윤종오 · 손 술 · 김선민
전종덕 · 정춘생 · 김재원
정혜경 · 최혁진 · 김종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법계약의 해지 조항을 두어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에 있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를 여전히 입증하기 어렵고 구제도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이라는 법의 목적상 적합성원칙 등을 위반하는 위법계약 체결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요구 규정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3배의 징벌 손해 배상하도록 하고, 고의·중과실에 의하여 이루어진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6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며, 이 중 제17조(적합성원칙), 제18조(적정성원칙), 제19조(설명의무), 제21조(부당권유) 위반시 손해 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제19조(설명의무) 위반시 소비자가 입은 손해액을 일정 기준에 따라 추정하고, 계약해지권 외에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중 3개 이상 위반하거나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른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경우,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4조, 제44조의2 신설, 제47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이”로, “그 손해를”을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9조”를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또는 제21조”로, “그 손해를”을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발생한 손해의 6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소비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5. 금융상품판매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손해액 추정)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성 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금융상품의 처분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금융소비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뺀 금액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제47조의 제목 중 “해지”를 “해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해지할”을 “해지 또는 취소할”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지된”을 “해지 또는 취소된”으로, “해지와”를 “해지 또는 취소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해지요구권의”를 “해지요구권 또는 계약 취소의”로 한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계약의 해지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다음 각 목 중 셋 이상을 위반한 경우 계

약의 취소(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가. 제17조제3항

나. 제18조제2항

다.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

라. 제21조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를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및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법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u>고의 또는 과실로 이</u>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u>그 손해를</u>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 ----- <u>인</u> ----- ----- ----- <u>그</u> <u>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u> -----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u>제19조</u> 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u>그 손해를</u>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u>고의 및 과실이 없음</u> 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u>제17조</u> <u>부터 제19조까지 또는 제21조</u> ----- ----- <u>그</u> <u>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u> ----- -----.
<u><신 설></u>	③ <u>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발생한 손해의 6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u>

<신 설>

<신 설>

다.

④ 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소비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5. 금융상품판매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44조의2(손해액 추정)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성 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생략)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금융상품의 처분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금융소비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뺀 금액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설명의 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해지 또는 취소할-----.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계약의 해지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다음 각 목 중 셋 이상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취소(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지나

<u><신 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u>해지된</u>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u>해지</u>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u>해지요구권</u>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u> <u>가. 제17조제3항</u> <u>나. 제18조제2항</u> <u>다.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u> <u>라. 제21조</u> 3. <u>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를 위반한 경 우 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u> ③ ----- ----<u>해지 또는 취소된</u>----- ----- -----<u>해지 또는 취 소와</u>----- -----. ④ ----- -----<u>해지요구권 또는 계약 취소의</u>----- ----- ----- -----.
--	--